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9
------	------

제출년월일 : 2017. .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동일내용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용어 정비 및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출신 독신·신규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변경 (안 제3조)

나. 지방출신 독신·신규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지원 조항 신설 (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6.12.8. ~ 12.28. (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3)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 권고사항 있음

평가대상	권고사항	조치사항
제8조 (후생복지 심의위원회)	<p>※ 가정복지과 권고안</p> <p>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③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 권고사항 미반영</p> <p>- 해당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1명으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의견은 실효성이 없음</p>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5)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6) 비용추계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속공무원 중 지방출신 독신·신규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지원 시설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에게</u> 적용한다.</p> <p>②·③ (생략)</p> <p>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 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제3조(적용범위) ①----- <u>소속공무원</u>-----</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소속공무원 중 지방출신 독신·신규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지원 시설 등</u></p>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 지방출신 독신·신규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지원 시설 건립에 대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주거안정지원 시설 건립에 관한 연도별 소요예산 및 내역
- 비용추계기간 : 2017. 8. ~ 2018. 12.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직원기숙사 건립 설계비	148,000					148,000
	직원기숙사 건립 공사비		3,802,000				3,802,000
	소계(b)	148,000	3,802,000				3,950,000
<input type="checkbox"/> 총 비용(a-b)		148,000	3,802,000				3,950,000

4. 재원조달 방안 : 2017년, 2018년 구비(일반회계)로 편성

5. 덧붙이는 의견 : 구체적인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안정행정국 총무과 추재홍
연락처	02-3153-8222